

●법무부령 제1107호

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6년 02월 09일

법무부장관 인

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개정령

인권보호수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다음 각 호의 비위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공소제기 또는 징계청구된 검사는 인권보호관으로 보임하거나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.

1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른 성희롱
2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매매 관련 범죄
3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스톱킹행위
4.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음주운전, 음주측정불응, 음주측정방해행위, 약물운전 및 약물측정불응
5.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·요구·약속(금액 및 대가성 여부를 불문한다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9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 중 약물측정 불응 관련 부분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임되거나 지정된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은 제6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이 보임되거나 지정될 때까지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.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형사사법절차에서 인권보호와 적법절차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두거나 지정하는 인권보호관 및 인권보호담당관에게는 높은 성인지 역량 및 도덕성이 요구되므로, 성 관련 비위 등으로 형사처벌·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공소제기 또는 징계청구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검사는 인권보호관으로 보임하거나 인권보호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.